

[별표 5] <개정 2000.1.8>

가족수당지급구분표

(달러 : 미합중국화폐단위임)

적 용 범 위	부 양 가 족	월 지 급 액	비 고
1. 국가공무원 (재 외 공 무 원을제외한 다)	배우자	30,000원	
	배우자를 제 외한 부양가 족 1인당	20,000원	
2. 재외공무원	배우자	재 외 근 무 수 당 월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	1.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자녀는 높은 연령순으로 한다. 2. 가족수당지급대상의 인정은 관 할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장관이 행한다. 3.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주재국 에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 표 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을 지급한다.
	자녀 1인당	60달러	